2013 달라지는 보건복지

보건의료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
-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

-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
-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 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수급자분들에게 총 19억 원을 추가로 지원
-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 원씩 추가로 지원

건강정책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

- '13년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

-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 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

이용실 및 미용실 외부에 최종지불요금 표시 실시

'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외부에 표시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6,000여 개소로 전체 이·미용실의 13%에 해당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 3300만 원(대도시기준)에서 2억 28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이 확대

-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가구 1,224,457원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
- 수급자가 사망 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
-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

-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2012년 55.1만 원(부부 88.1만 원)에서 58만 원(부부 92.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

-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2년 43만 원에서 2013년 45만 원으로 확대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

-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 원 인상하여 지급

저출산 · 고령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13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 원)하게 지원

-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 원, 4회차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 원)하게 지원

독거노인 보호 강화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

-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2천 명에서 2013년 172천 명으로, 3만 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
-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최대 6천 명의 독거노인이 혜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

-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 원) 이하 치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 원) 이하이신 치매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

- 한 번 약을 구입할 때 매월 나누어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 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 원(월 3만 원) 상한내)를 지급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8천 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1월부터 감경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를 약 65천 명으로 확대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 '12년) 28천 명 → ('13년) 65천 명
  * 감경액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1/2 감경(시설 10%, 재가 7.5%)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 20일 이용): (현행) 119,200원 → (변경) 59,61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확대

2013.1.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 원으로 인상, 이를 통해 약 428만 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지원 혜택

보육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

- '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3.1일부터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全계층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만3-5세(36개월 이상) 아동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全계층 월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
- '12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했던 농어촌 양육수당은 지원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원. ┼